자동차검사 품질향상을 위한 검사업무 참고자료 [4호]

어린이운송용 자동차 체크리스트

(2020.09.07. ver)

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

	항 목	내 용	적 용 시 기	판정
1	**색상** <제19조>	- 황색(스포일러 포함 / 천정에어컨, 몰딩 제외)		부적합
2	**표시등** <제48조>	- 안쪽 황색 (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) - 바깥쪽 적색 (승강구 열릴 시 점멸) - 황색, 적색 동시점멸 금지		부적합 또는 시정권고
3	**어린이 보호표지** <제19조>	- 앞 : 우측 상단(150㎜*400㎜) - 뒤 : 중앙 하단(200㎜*500㎜) - 아크릴 재질,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, 탈부착형		시정권고
4	**정지표시장치** <제19조>	-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-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설치 가능	튜닝 : 14.2.21.~ 제작 : 15.1.1.~	시정권고
5	**승강구** <제29조>	- 1단 : 높이 30㎝ 이하 가로-승강구 유효너비 80% 이상, 세로-20㎝ 이상 - 2단 : 높이 20㎝ 이하(15인승 이하는 25㎝ 이하)		시정권고
6	**좌석** <제25조>	- 가로·세로 각각 27㎝ 이상 -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46㎝ 이상	19.12.31.까지	부적합
		- 좌석규격 : 가로 30㎝, 세로41.4㎝ 이상 - 등받이 : 71㎝ 이상(머리지지대 포함) - 좌석간 거리 :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	20.1.1.~	
7	**좌석안전띠** <제27조>	-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		부적합
8	**간접시계장치** <제50조>	- 좌·우 광각 후사경 설치 -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(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)		시정권고
9	**후방보행자 안전장치** <제53조의2>	- 후진경고음 발생장치: 경고음 반복 발생 - 후방영상장치: R 변속 시 2초 내에 작동	14.2.21.~ 택 1 설치 / 19.7.1.~ 둘 다 설치	시정권고
10	**하차확인장치** <제53조의4>	-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(경적)·표시등(비상등) 작동 -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-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,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, 안전벨 스위치와 연동 설치,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-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dB(A) 이상	19.4.17. 시행 (기존차량도 의무설치)	부적합
11	**최고속도 제한장치** <제54조>	- 기준일자 이후 제작·튜닝된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- 승합자동차의 경우,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	19.11.15~	부적합
12	**썬팅** <제94조>	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% 이상		시정권고
13	**운행기록장치** <제56조>	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에 따라 의무설치	21.1.1.~ (기존차량 23.1.1.~)	

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
사 전 예 행

□ 정기·종합검사 시 판정기준 및 법적근거

○ 색상

- 색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합 <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7호다목>

○ 표시등

- 미설치(제거) 또는 등광색이 상이한 경우 부적합 <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>
- 설치상태(파손, 조사각도 등)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

○ 어린이 보호표지

- 미설치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

○ 정지표시장치

-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

○ 승강구

-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

○ 좌석

- 좌석의 임의변경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<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4호>

○ 좌석안전띠

- 제거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<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5호>

○ 간접시계장치

-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

○ 후방보행자 안전장치

-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

○ 하차확인장치

- 미설치, 임의개조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<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7호>
- 성능확인 당시에 신고된 작동상태(참고자료 참고)와 상이한 경우에는, 장치의 성능·기능·목적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판정 및 검사기준처로 해당 내용 통보 (수검자에게 성능확인내용과 작동상태가 다름을 구두 안내)

○ 최고속도 제한장치

- 임의해제 및 조작 등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<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>

○ 썬팅

-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권고

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